[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0060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5-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10



정 보 공 개 서

국민부대찌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 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재6길 2-3, 1층(동삭동)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1666-2979

E-mail: kshfood@naver.com

Homepage : 준비중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Ι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국민부대찌개		경기도 평택시 서재6길 2-3, 1층(동삭동)					
국민부대찌개	법인설립등기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	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법원점	-		2022-04-04	김성환	1666	-2979	031-666-6228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번호		2-13-01526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국민부대찌개	
상 호	국민부대찌개 OO점	
상표(서비스표)	왕 국민부대찌개	등록일자 : 2021.02.24. 등록번호 : 401696486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154	1,770	15,383	139,970	18,501	20,437
2022년				205,089		
2023년				261,529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ol =	취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성환	대표자	2019.10.04. ~ 현재	ru u tl	가맹사업 총괄			
관련 임원	김정환	│ └╿┷┸ │	2019.10.04. ~ 현재	대표자	/ 기정사립 중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급	상근	비상근	극전T(ơ)
2023년 12월 31일	1	0	0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자	케이에스에이 치(KSH)푸드	가맹사업 경영	2017.03.~2023.02.	영업표지 : 비어사케 (등록번호: 자진등록취소) 업종 : 주점
네표시	/김성환	가맹사업 경영	2019.01.~2023.02.	영업표지 : 서민족발 (등록번호: 자진등록취소) 업종 : 한식(족발)
가맹본부	국민부대찌개 /김성환	가맹사업 경영	2019.10.~현재	영업표지 : 국민부대찌개 (등록번호: 2020041608) 업종 : 한식(부대찌개)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또는 등록일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② 국민부대찌개	43류	등록일자 : 2021.02.24	등록번호 : 4016964860000	김성환	2031.02.24.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당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일 현재 가맹점이 없습니다.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민부대찌개 국민부대찌	구미브대피게	김성환	2019.10.04. ~	경기도 평택시 현촌5길 5, 120,	
국 근무대씨게 	축 근무대까기 	10 E	2022.09.19.	121호(용이동)	
국민부대찌개		김성환	2022.09.19. ~	경기도 평택시 서재6길 2-3,	
법원점	ኀ근구네씨/∏ 	ㅁᆼ된	현재	1층(동삭동)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8 합표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국민부대찌개	한식	부대찌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TICH		2021.12.31	1.		2022.12.31	1.		2023.12.31	l.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1		1	1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2022년						
2023년						

[※] 당사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이 없습니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十七	중오/이금	8 합표시	등록번호	ㅂᆼ	2021.12.31.	2022.12.31.	2023.12.31.	
	케이에스에이치(K	비어사케	자진등록취소	주점	10/0	0/0	0/0	
대표자	SH)푸드/김성환	서민족발	자진등록취소	한식	0/0	0/0	0/0	
대표자	국민부대찌개 /김성환	국민부대찌개	2020041608	한식	0/1	0/1	0/1	

7.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평균	군매출액	연간평균마	출액(상한)	연간평균마	출액(하한)	비고
~17	가맹점 수	평균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
전체	0							해당없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u>경남</u>								
<u>제주</u>							+ 01 0 - 1 -	1+1-1 01 4

[※]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이 없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	-

[※] 당사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그ㅂ 스다	71.71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十七	구긴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니끄
광고·판촉	-	2023년	없음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지점	전화번호
우체국	-	전지점	1588-1900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와 계약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사의 프랜차이즈보 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사이버종각대리점 연락처 : 02-735-3385 팩 스 : 070-7827-3785
보험계약자	국민부대찌개법원점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점포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가입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가입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기간 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비를 잔여 계약기간 만큼 일할계산하여 반환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교육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총계	11,000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총계	2,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가입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합계	1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금액		남액			
구분	지급대상	33㎡기준 (10평)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설비/집기	협력업체	7,700	-			
간판/사인	협력업체	2,200	-	계약체결과	발주 또는 시공 전	매장 상황에
인테리어	협력업체	16,500	1,650	동시	계약취소	따라 변동
초도물품	가맹본부	2,200	-			
·	계	28,600	2,860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비용 외 점포 상황에 따라 내부철거, 닥트, 전면윈도우 및 창호신설, 전기승압 및 간선, 화장실, 냉/난방, 도시가스, 소방,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테라스 및 외부 파사드, 의탁자 등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 3.3㎡ 당 275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 월 330천원	매월 가맹본부 지정일	반환없음		
POS사용료	협력업체	매 월 35천원	매월 지정일	반환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훈련실비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III.1. 교육훈련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통지 후 7일	미 시행시	시행	V.9. 광고 및



		따라 가맹점사 업자측이 배분 하여 분담		반환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Ⅷ.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2]%	지급기일 익일부터	반환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2023년에 가맹점이 없으므로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점포운영 및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



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 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 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계약기간에 한하여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가맹금 중 영업표지 해당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1."을"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갑"으로부터 부여 받은 제4조 제2항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갑"만의 고유 익스테리어(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	제36조
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2."을"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갑"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갑"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다.

3."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4."을"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의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판매가격(원)	비고
	국민부대찌개	10,000	
	우삼겹부대찌개	11,000	
	베이컨부대찌개	11,000	
홀메뉴	페퍼로니부대찌개	11,000	
	찜닭(소) 맛선택(순한/매콤)	29,000	
	찜닭(중) 맛선택(순한/매콤)	33,000	
	찜닭(대) 맛선택(순한/매콤)	37,000	_
	소세지추가	6,000	
	햄추가	6,000	
	납작당면	2,000	
홀 추가메뉴	우삼겹추가	4,000	
e (*) ((()	만두사리	3,000	
	치즈추가	500	
	사리면	1,000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공기밥	1,000	_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왕새우튀김	8,000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사이드메뉴	고기물만두	6,000	1회 위반: 구두 경고
	추억의돈까스	5,000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튀김만두	5,000	_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1인(포장)	10,000	
	2인(포장)	17,000	
	3인(포장)	25,000	
	4인(포장)	32,000	
	3인셋트(포장)	24,000	
	4인셋트(포장)	30,000	
포장/배달메뉴			
	1인(배달)	14,000	
	2인(배달)	21,000	
	3인(배달)	29,000	
	4인(배달)	36,000	
	3인셋트(배달)	28,000	
	4인셋트(배달)	34,000	



소세지추가	4,000	
햄추가	5,000	
소시지+햄추가	5,000	
납작당면	2,000	
만두사리	3,000	
베이컨토핑	5,000	
페퍼로니토핑	5,000	
페퍼베이컨토핑	6,000	
육수추가	1,000	
사리추가	1,000	
공기밥	1,000	
음료수(배달)	1,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원·부재료 및 1)의 판매제한 상품	기재되 제푸으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은 상기 '1)'의 표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로인 남중 납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부대찌개 전문점	국민부대찌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① 점포소재지로부터 직선반경(네이버지도-길이재기 기준) 500m를 원칙으로 함②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m' 이상의 집합건물)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		영업지역 변경(안)을
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서면으로 통지하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당사 담당팀 검토 →	30일 이내에 동의
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15
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서면 통지 →	일 이내에 영업지역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가맹점사업자 동의 →	재조정 완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영업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
되는 경우		<u>능</u>)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 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_ 예→B, 아니오→®	D-10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이번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6조 2항

- 1."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나.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에 관한 사항
- 라."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35조 1항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개월의 여유를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을"이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관련 계약조문 27조 1항

- "갑"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u>3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u> "을"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3."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4."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5."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7."을"의 채무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또는 제18조 제1항 로열티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18조 제4항을 불이행한 경우
- 8."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1조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9."을"이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을"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11."을"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12."을"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3."을"이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을"이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5."을"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16."을"이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3일 이상 휴점한 경우(POS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히는 날은 휴점일로 간주)
- 17."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8."을"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을"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0."을"이 제33조 4항을 위배한 경우
- 21."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2."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 23."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4.본 계약의 특약사항 위반 시

관련 계약조문 13조 2항

- 1."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해진 초도 물품과 상품 기타 장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2."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3."을"이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을"이 가맹점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 5.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35조 2항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필요시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 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가맹본부 검토 → 승 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 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국민부대찌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가맹본부 검토(시 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24:00	월 26일 이상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상권에 따라 상이	직접 근무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상권에 따라 사전 협의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점포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점포운영상태 및 교육생 관리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가맹관리팀	
회계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자료 요청 → 회계자료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가맹관리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브 과그 서겨		부담비율		보다 저비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가맹점 모집광고	100%	-	
전국 및	브랜드 광고			
지역단위 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 브랜드 광고	50%	50%	광고·판촉 계획 공고 및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광고 50%, 판촉 70%) → 광고·판촉비 납입
전국 및 지역단위 판촉				→ 광고·판촉 시행
가맹점 자체 광고·판촉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단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4조 (광고 및 판촉)

⑥"을"은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할인비용, 경품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⑧"을"은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 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9조

- ① "을"은 "갑"의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 영업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갑"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 자료 들은 가맹본부의 핵심 경영노하우로서 영업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전항의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상기 1,2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고객정보를 법령의 허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위반행위마다 **위약벌 금 이천만원**을 지급한다.
- ⑤ 본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 5년간 유지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계약서
①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의 해지유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을"이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조 기재 위약벌 외 "갑"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을"이 제19조(비밀유지의무) 4항을 위반하여 위반행위마다 금 삼십만원(부가세	
별도)을 위약벌 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2항을 위반할 경우 동일영업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부가세별도), 동종영업인 경우 위약벌 금 이천만원(부가세 별도)를 "갑"에	제37조
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25조(자점매입금지)위반 및 제35조 제2항 제10호(정당한 사유 없는 영업중단	
7일이상 휴업)를 위배할 경우 위반행위당 위약벌 일천만원(부가세별도) 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을"이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금 삼십만원(부	
<u>가세별도)을 위약벌</u> 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당일	
실내외 공사착수	- 자체 공사	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1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2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44조 (분쟁의 해결)

- ①"갑"과 "을"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 또는 가맹본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 해결 노력을 한다.
- ②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 또는 "을"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가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한다.
- ④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선 사유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세인 시ㅠ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항목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절차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
	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ni o H Lr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비용부담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
제외사유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Ш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교육	회사소개, 점포운영교육, 고객응대, 서비스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개점 전일	필수
개점 후 교육	본사정책 안내,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상품 및 신서비스 교육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7일	5,500 (1인 기준)	-
 개점 후 교육	교육필요시 실시	경우에 따라 실비부담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8.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1조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 제27조 (상품공급의 중단)
라.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
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 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
다.)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직영점 주소
1	경기	평택법원점	경기 평택시 동삭동 707-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1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61,52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크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가맹점사업자용)

▶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빈 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1 2 2 1 10 10 1	
가맹희망자 성명	(인) 연락처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4 74 101	아래 빈 칸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	네 내	가장	인근에	영업중인	가맹점	목록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운
	충북	□ ₹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_(가맹본부용)

▶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빈 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1 11 10-10 1	CENTRALE TOWNS BITE
가맹희망자 성명	(인) 연락처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A 34 \$1.01	아래 빈 칸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수령확인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기	다치단체	내	가장	인근에	영업중인	가맹점	목록
					<광(역지방자	치단체	>					

□ 서울	□ 인천	□ 경기		루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전	선남 🗆	경북 □	경남 🗆	제주

순번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